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10222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원, 이숙미, 공지희, 양병헌
피 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면, 유해용, 진상범, 하상혁, 김희중, 이중표, 홍민영, 김이경, 이지은, 양호진, 조현지, 김보미, 이지오, 류승현, 홍화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고의영, 서삼희, 유지원, 강인경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94,889,670원, 원고 B에게 1,725,498,180원, 원고 C에게 1,437,915,15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아래에서 설명할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회사명이 처음 나오는 경우만 기재한다)가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해지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전에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아래와 같은 각

1)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피고는 2024. 12. 19.이 도래하면 원고 A에게 25,594,889,670원, 원고 B에게 1,725,498,180원, 원고 C에게 1,437,915,150원을 각 지급하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미 위 장래이행청구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청구취지를 단순이행청구로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가) 약정해지사유

원고들은 ① 피고를 압박하여 피고가 보유한 F 발행주식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F에 대한 피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F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거나, ② G를 데리고 피고 및 F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려고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전문 제2항, 제2.3조 후단 및 제1호, 제10.3조 제(a)항 및 제(d)항, 제12.9조, 제12.10조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주주간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1.2조 제(a)항의 약정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법정해지사유

원고들은 G를 데리고 피고의 지배범위를 이탈하거나 F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피고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영업보고 요청을 거부하거나 피고 및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무차별하게 제기함으로써 피고와 원고들의 상호 협력관계와 그 근간이 되는 긴밀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파괴하였는바, 이는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피고는 2024. 9. 20.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1.4조 제(b)항에 따라 원고 A, B이 보유한 F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에 관한 공정가치 산정절차가 종료된 2024. 11. 11. 위 원고들이 보유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원고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일은 2024. 11. 19.이다. 피고가 먼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위 원고들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5. 2. 4. 음악제작, 음반제작, 음악 및 음반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H은 음악 및 음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의 자회사이다.

3) F는 2021. 11. 2. H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작, 음반제작, 음악 및 음반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F'는 H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를, 'H'은 위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를 각 의미한다).

3) 원고 A은 F 설립시부터 2024. 8. 27.(해임)까지는 F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2024. 10. 17.(이사 선임)부터 2024. 11. 20.(사임)까지는 F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4) 원고 B, C은 각각 2023. 4. 25.부터 2024. 5. 31.까지 F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5) I는 2024. 1.경부터 피고에 IR(Investor Relations)팀 및 글로벌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2. 1.부터 F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6) 'G'는 J, K, L, M, N 5명(이하 통틀어서 'G 멤버들'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F 소속의 여성 아이돌그룹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나. F의 설립 및 업무협약의 체결

1) 피고는 2021. 11. 2.경 H이 보유한 F 지분 100%를 50억 원에 인수하였고, F는 2021. 11. 17.과 2022. 7. 6. 각각 100억 원, 6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다.

2) 원고 A은 2019. 1.경 피고의 '최고 브랜드 책임자(CBO)'로 입사하였다가, 2021. 11. 2. F가 설립되면서 F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F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원고 A, F는 2021. 11. 11. 업무협약(을2)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약에는 피고이 원고 A에게 ① F 발행주식총수의 10%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② 원고 A이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F 발행주식을 피고에게 F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 ③ 원고 A이 F 발행주식총수의 5%에 일정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거나 F가 상장되는 경우 위 상여금에 갈음하여 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G 멤버들의 전속계약 체결 및 데뷔 등

1) H은 2018년경 이후부터 가칭 'O'과 'P'의 아이돌그룹을 구성하여 데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 G의 멤버들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는 'O'으로 데뷔할 것을 목표로 H의 소속 연습생으로서, F가 설립된 이후에는 F 소속 연습생으로서 각 가수 활동 준비를 해오던 중 2022. 4. 21. F와 사이에 F가 G 멤버들의 연예 관련 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122,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3) O은 'G'라는 명칭으로 2022. 7. 22. F의 유일한 소속 연예인으로서 데뷔하였다. F는 2022년 매출액 약 186억 원 및 영업손실 약 40억 원, 2023년 매출액 약 1,102억 원 및 영업이익 약 335억 원, 2024년 매출액 약 1,111억 원 및 영업이익 약 308억 원을 달성하였다. F의 3개 연도 영업이익 합계는 603억 원이다. D의 G에 대한 투자액은 약 210억 원이다.

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23. 3. 27. 피고이 보유한 F 발행주식(발행주식 총수 3,220,000주[2])을 1주당 6,522원(액면가의 약 1.3배)에, 원고 A에게는 573,160주(지분비율 17.8%, 을98), 원고 B에게는 38,640주(지분비율 1.2%, 갑100-1), 원고 C에게는 32,200주(지분비율 1%)를 매도하였고, 원고 A은 위 매매대금 중 37억 원을 피고의 최대주주로부터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갑128), 같은 날 원고들, F 등과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갑4)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은 2023.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e)항에 규정된 경업금지약정,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5.3조 제3항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1주당 매매대금을 F 영업이익의 13배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2024. 3. 25.경까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수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들과 피고 사이 분쟁의 경과

1) 피고의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소속 걸그룹인 'R'이

2) 이는 F의 2022. 7. 6.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추가발행 될 신주를 포함한 주식 수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2024. 3. 25. 데뷔하였다.

2) 원고 A은 2024. 4. 3. 피고과 Q에, 'R의 컨셉, 스타일링, 안무 등이 G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R 카피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30, 이하 '2024. 4. 3.자 항의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G 구성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원고 A에게 'G와 R의 유사성 및 피고의 G에 대한 차별대우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2024. 3. 31.자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3) 원고 A은 2024. 4. 16. 피고에게 "피고의 '음반 밀어내기(해외 자회사 등을 이용하여 7일간 초동 음반 물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반품 조건부로 판매하는 행위)', R과 G의 유사성 등 카피 문제" 등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35, 이하 '2024. 4. 16.자 항의메일'이라 한다)을 재차 발송하였다.

4) F의 감사는 2024. 4. 22. F에 'F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갑9-1)을 보냈고, 피고의 감사위원회도 같은 날 F에 '원고 A을 포함한 F의 경영진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F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어 F의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갑9-2)을 보냈다.

5) 피고는 2024. 4. 22. 원고들에게 "귀하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a)항, 같은 조 제(d)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제402조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갑9-3)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6) 원고 A은 2024. 4. 25. 자신에 대한 감사의 부적법, G 카피의혹, 피고의 밀어내기 의혹 등을 제기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1차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개최하였다.

7) 피고는 2024. 5. 7. 원고들에게 "피고는 F의 주주로서 상법 제402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재차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8) F는 2024. 8. 27. 원고 A을 F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같은 날 S을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F는 2024. 10. 17. 원고 A을 F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였다.

바. 이 사건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1) 피고는 2024. 7. 8. 원고들, F에게 원고 A, B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제11.2조 제(a)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기초가 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지(갑11-1, 이하 '피고의 2024. 7. 8.자 해지통지'라 한다)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지서는 그 무렵 위 수신인들에게 도달하였다.

• F에 대한 당사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수신인들이 F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자 모색·시도한 행위 • 당사와 관련 레이블의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받아 더 이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수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당사 및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하여 멀티레이블 체제를 부인하고 당사 및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의 가치, 명예, 신용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 • F의 핵심 IP인 G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F의 이익 및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 행위, 나아가 G 멤버 및 그 부모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 및 당사와의 신뢰관계를 고의적으로 파괴시킨 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 그밖에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및 멀티레이블 체제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

2)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2024. 11. 4. 피고, 피고의 CFO T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 A 429,870주, 원고 B 28,980주, 원고 C 24,150주 합계 483,000주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28,758,303,000원(1주당 59,541원)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니, 공문 수령한 날로 10영업일 내에 매수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갑4-1, 이하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다음날 피고에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24. 10. 30. 원고 C에게 '원고 C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전문 제2조, 제10.3조 제(e), (f)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피고의 2024. 10. 30.자 해지통지'라 하고, '피고의 2024. 7. 8.자 해지통지'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피고의 해지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 C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의 대리인은 2024. 9. 20.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1.4조 제(b)항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한 F 주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85)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위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5) 2024. 11. 11.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1.4조 제(b)항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한 F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주당 5,000원(원고 A 보유 주식 573,160주 2,865,800,000원, 원고 B 보유 주식 38,640주 193,200,000원)으로 하는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위 원고들은 매도대금 수령 계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94, 이하 '피고의 주식매도청구권행사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다음날 위 원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을92, 93).

5) 원고들은 2024. 11. 20.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및 F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원고 A을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나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190, 이하 '원고들의 해지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F에게 도달하였다.

사.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 A의 선행 가처분 사건

202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가처분(이하 '선행 가처분'이라 한다) 사건에서 '원고는 2024. 5. 31. 소집될 주식회사 F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원고 A 해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A 측의 카카오톡 등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는 대표이사 A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이 있었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주요 이유는 별지2와 같다.

2) 원고들의 배임 관련 형사사건

가) 피고는 2024. 4. 25. 및 2024. 5. 14. 원고 A, B과 I, 스타일디렉팅팀 팀장인 U를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용산경찰서에 각 제출하였으며, 2024. 7. 19. 원고 A, B과 I를 "'R이 G를 카피하였다'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하였다"는 등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사실로 고소장을 같은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나) 서울용산결창서는 2025. 7. 14. 원고들, I, U의 업무상배임 혐의(앞서 본 카피 의혹과 밀어내기 의혹 제기, 2024. 4. 3.자 항의 메일과 2024. 4. 16.자 항의 메일 발송, F의 독립방안 모색 및 실행 등)에 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352, F의 독립방안 모색은 A의 임기가 만료하고 풋옵션 행사한 이후를 가정하고 있고, F 지분 상장이나 매수 방안은 D의 승인을 대전제로 한 점 등)을 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위 사건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3) G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경과

가) G 멤버들은 2024. 11. 13.경 피고에게 'G 멤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G 카피 의혹, 원고 A의 대표이사 복귀 등 8가지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24. 11. 14.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F는 G 멤버들에게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1. 28. 16:00경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사보고서를 첨부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였으나, G 멤버들은 2024. 11. 29. 00:01경 피고에게 '2024. 11. 29. 자로 피고과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 멤버들을 상대로 '피고과 G 멤버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5. 10. 30. F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11. 14. 확정되었다(2024가합1133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지 37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5조에 따라,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2024. 11. 19.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 사건 주식(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중 각 75%)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주당 59,541원[= 191,724,540,169.5원(= 2022년과 2023년 F의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 평균액 14,748,041,551.5원 × 13) / 위 주식매수청구권행사통지일 기준 F 발행주식 총수 3,220,000주,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식매매대금으로 원고 A에게 25,594,889,670원(= 원고 A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429,870주 × 1주당 매매대금 59,541원), 원고 B에게 1,725,498,180원(= 원고 B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28,980주 × 1주당 매매대금 59,541원), 원고 C에게 1,437,915,150원(= 원고 C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24,150주 × 1주당 매매대금 59,5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해지사유로서 계약의 중대한 위반

가. 관련법리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그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3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 해지사유는 약정해지사유인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정해지사유(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기초가 된 상호간의 신뢰관계 파괴)'라도 위임계약 일반에서 적용되는 단순 신뢰관계 파괴로는 부족하고 약정해지 사유인 중대한 위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1) 피고는 2024. 7. 8.자 해지통지서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1.2조 제(a)항에서 규정한 약정해지사유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기초가 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법정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6).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1.2조 제(a)항에는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 해지사유로서 법정해지사유를 위임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단순 신뢰관계 파괴로 해석하는 경우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이란 약정해지사유를 굳이 규정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법정해지사유를 '중대한 위반이 아닌 사유'로 해석하면 중대하지 않은 법정해지사유(보통 이하의 사유)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제11.2조 제(a)항 명문 규정을 쉽게 우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당초 해지사유로 '중대한 위반'을 규정한 당사자의 의사와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2) 상법 제385조 제1항에는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F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2.1은 아래와 같이 '원고 A이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해임 사유와 사임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2.1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
> (a) A이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D는 A이 F 설립일인 2021. 11. 2.부터 5년의 기간 동안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F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c) 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A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또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은 대표이사 및/또는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지체 없이 사임하도록 한다.
>
> 1. A이 고의·중과실로 F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2. A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3. A이 F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 4. 기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원고들은 2021. 11. 2. F 설립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4. 11. 3.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갑1 6면). 피고는 G의 성공(과거)과 지속(미래)에 따른 보상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통해서 F 지분의 20%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풋옵션 행사시 멀티플 13배를 보장하며, 원고 A은 F 설립일로부터 5년인 2026. 11. 2.까지 재직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2024. 7. 8.자 해지통지 당시 원고 A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약 256억 원으로 추정되고 2025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도에는 약 1,000억 원(을22-33 4면)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단순한 이사의 위임계약 관계(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임의 자유가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적 이해관계는 강화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해임 사유와 사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0.3조 제(a)항에는 "A은 F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F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F 및 기타 채무자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규정 또한 제11.2조 제(a)항 문언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카카오톡 등에 나타난 대화 내역에 대한 판단

가.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능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제출한 원고 A과 외부인 사이의 카카오톡, 원고 A, B, I 등의 카카오톡 및 이메일 등 피고의 피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통해 취득한 각 증거는 피고가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위반 등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고, 위 카카오톡 등은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감사권에 근거한 감사절차에서 원고 B의 자발적 반납으로 획득되었고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I의 동의를 받아 키워드 검색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고 제출된 증거 대부분은 업무관련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을171, 246, 251 24면 등), 위 카카오톡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나. 카카오톡 등에 나타난 사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 1) 내지 5)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다음 (1) 내지 (4) 사실, 사정[즉 원고 A, B이 F에 대한 피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F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하 'F 독립 방안'이라 한다)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 결렬을 조건으로 2025년경 풋옵션 행사 이후에 피고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고 주요 압박 수단으로 원고 A의 F 이탈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V 등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나간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였다]이 인정되고, 이러한 F 독립 방안 모색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A은 F의 부사장인 I 등과 함께 F 독립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 결렬을 조건으로 '2025년경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면 F는 빈껍데기[3]가 된다'는 가정 아래 피고와 협상을 통해 F의 지분을 매수(8천억 원 ~ 1.5조 원)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3) 2024. 2. 22.경 V은 W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원고 A이 F 독립 방안을 모색한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4. 4. 3.자 및 2024. 4. 16.자 항의

3) 뒤에서 보는 문맥상 피고 A의 이탈로 발생한 F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메일을 받을 때까지 투자자 접촉 자제 촉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선행 가처분 사건과 업무상배임 고발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의 F 독립 방안 모색과 실행 여부, 카피 문제제기 등'이라는 점이고 주요 증거로 카카오톡 등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를 같이한다.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는 'A 측 카카오톡 등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는 A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5. 7. 14.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카카오톡 포렌식결과 엑싯(Exit)은 경영권 탈취 의미의 엑싯이 아닌 주주간 계약상 대표 A이 정상적인 만기 5년을 채운 뒤,[4] 풋옵션 행사한 이후를 가정하고 있고, F의 주식상장을 가정하거나 F 지분을 팔도록 한다는 점도 D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5)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4조는 "이해관계인은 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F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D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F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방안을 모색하는 행위를 한다면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의문이다. 원고 A 측이 구상한 방안은 2025년경 풋옵션 행사 이후 피고가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1) F의 독립 방안 모색

F의 독립 방안에 관한 원고 A과 I의 구상은 아래와 같이 전개되어 2024. 4. 4.자 카카오톡 내용과 같이 '2025년경 원고 A이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면 F는 빈껍데

4) 카카오톡에 "만기 5년을 채운 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내역은 보이지 않는데 이 표현은 2025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이후의 이탈 계획을 재직의무기간인 2026. 11. 2. 이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시정촉구 불이행을 전제로 해지권이 발생하므로 해지권 발생요건으로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 한 민 국 법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기가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F 지분을 저가에 매수하는 방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2024. 1. 24.자 I와 [A]의 카카오톡 : F가 먼저 한 3000억 짜리 회사 살거니까 D야 우리 외부 투자 받게 **승낙**해줘 이렇게 외부 투자를 받은 다음 이들을 백기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 F에 우호적인 외부 지분을 확보해 두면, D가 맘대로 F 망가뜨리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 임원 해임이나 정관변경, 인수 합병, 영업 양수도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데, 이것들은 의결권의 2/3 (66%)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 하면 D 지분을 66%로 낮출 수 있으면 D 지분을 66%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면 방어가 가능해 져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Plan B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전략인데요. Plan A : 빠르게 & 높은 가격으로 exit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 Plan B : 대마불사 전략. 사업다각화 해서 IPO 시킨다고 D에 **허락**받고 3천억 쯤 외부에서 땡겨 와서 이런 저런 회사들(ex. X / Y / 일본 스트리트 브랜드 등등) 사와서 똘똘 뭉쳐가지고 D가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음. 저걸 사는 건 놔두냐) 투자 받는 걸 **동의** 받아야죠. [그니까. 그걸 놔두겠나고] D 입장에서도 F가 IPO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E처럼 4조 value로 IPO 하면 지네가 들고 있는 지분가치가 **2.5조** 되는 거라 절반만 팔아도 또 한번 돈ㅈㄹ 가능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플랜 B입니다. [ㅋㅋㅋㅋ] 이렇게 판 키우시는 거 안좋아하시는 거 알고. (갑30, 을22-2 11면)

(2) 2024. 3. 14.자 I와 (A)의 카카오톡 : 오늘 모임은 어떠셨습니까 ㅋ (좋아 나중에 한번 봐도 될 듯 진전 생기면 **데리고 나와라**가 중론인데 계약 내용 좀 자세히 보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랄 거에요 … VC 라고 했죠? A님이 나오셔서 회사 차리는 걸 가장 바랄거고(을22-9 3면), … 전속계약기간 22년 8월 1일 ~ 29년 7월 31일 이라고 합니다. … 월 평균 매출액은 2억 원으로 잡고 해지시점은 6월 말로 잡으면 잔여기간은 약 62개월이고, 1인당 해지금액은 약 124억 원, 5명으로는 620억원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중요한 계약의 변경, 해지, 갱신은 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잉? G?) 네 (얼마 안 되는데?) 월 평균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더 카질 수도 있습니다. …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정산금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매출액 하면 인당 15억~20억 원 나올 것 같습니다. … **4500억원 ~ 6200억 원**입니다. (을22-10 6~7면).

(3) 2024. 3. 15.자 I와 (A)의 카카오톡 : **아무리 생각해봐도 멤버들 탈퇴하는 건 저희쪽에서도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과거 앨범들도 다 놓고 나와야 하고, 브랜드들이랑 계약 같은 것들도 다 F로 물려 있고요. 계약해지 비용 6천 억원, 신규 계약금 1천억 + 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사 초기 투자금 200억 해도 7200억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8천억** 정도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노우, 예넨 미래가치를 넣지 … 그러니까 미래가치 산정액으로 **1조** 넘게 부르지 … G를 8천억에 주겠니?) 네 제가 D라면 **1.2조~1.5조** 부를거 같아요 … (협상재료가 강력한 게 있다면 이게 가능하지 개 같은 치부나) Z 카드 하나 가지고 있죠 (협상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조건) 너네 F 우리한테 안 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네 주식 다 팔거다 **협박** 7,000억 어치 들고 있어요 (이게 **협박꺼리가 되니?**) **협상**카드는 될거 같은 데요 (너네 주식 다 팔꺼다 이거) (을22-11 1~2면).

(4) 2024. 3. 29.자 I와 (A)의 카카오톡 : … 지금 계약을 푸는 게 아니라 지분을 털고 나가자는 얘기 하신 거 아녔어요? … (…AA -- AB이 F **탈출**시키는 방법론을 쓰라고 … F 먹겠다 = 엔터산업 진출이야… 이거 풀어주면 저절로야) AA나 Z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과 더불어 -- AB, AC, AD 같은 글로벌 자금 땡겨와서 D**랑 딜**하는 거죠 기존의 투자지분 넘겨주고 … D**랑 딜**하는 거죠. 어차피 **시간 지나고 A대표님 풋옵션 행사하고 나가면 F는 빈껍데기 되는 건데,** 그 전에 적당한 가치로 **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각자 기존에 지분 투자했던 것들이 있으니, 이 지분을 D가 보유하고 있는 F 지분과 교환하는 거죠(2면). … D**랑 딜**을 하는 거죠. 기존에 투자한 지분을 넘길테니 F 지분을 달라구요. AA/Z 입장에서는 전망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리할 수 있고, D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F가 빈 껍데기로 전락**하느니 그 전에 적당한 값 받고 파는 거니까 서로 win win입니다. (짜치게 썼네). (을22-18 3면).

(5) **2024. 4. 4.자 I와 [A]의 카카오톡** :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75% 행사 exit**(23년 영업이익 : 335억 / 24년 약 500억, 평균 세전 **약 1,000억 cash out**). F**는 빈껍데기 됨**. G 권리침해 소송 진행.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A대표님+D에서 F 사오는 plan). D에 F **팔라고 권유**. 적당한 가격에 매각. A**대표님은 F 대표이사 + cash out한 돈으로 F 지분 취득 + 주주간 계약 새로 체결**. 이렇게 되면 옛날에 못팔고 남겨 놓은 5%가 다시 쓸모가 있어지네요. [**대박**] 을22-33 4면.

(6) 2024. 4. 15.자 I와 (A)의 카카오톡 : <시나리오2> 24년 5월 : 싱글1 발매 +음방활동, 6월 : 싱글2 발매 + 일본음방 + AE 팬미팅, 7월 : 한국음방 + 데뷔 2주년, 8월 : 휴식 + 하반기 광고 쳐내기 + 9월~10월 AF 대관 시도, 9월 : 앵콜 팬미팅 / 개최공지, 10월 : 앵콜 팬미팅 / 예판공지, 11월 or 12월 : 앨범판매 + 음방 + 월드투어공지 + 25년 월두투어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음반을 내면 낸다고 했으니까 12월안에 내야 하잖아 발매일 12월에 찍혀야하지 않냐 아님 1월 발매 12월 홍보해도 되나). (갑76 4~5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7) 2024. 4. 17.자 I와 (A)의 카카오톡 : 점심때 … 라고 하는 미국 대형 투자기관 … 라는 사람 만나고 왔습니다. … F 성과 + A님 스타일 + G 계획 + D의 민낯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왔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현재 상황은 물론 이야기 하지 않구요. … F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는데, 현재 기준으로 USD 1billion(약 **1.4조)** 이면 당장 투자하고 싶고,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 많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G의 성장 + 향후 보이밴드 나오면 가치가 2~3배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요. 투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D가 돈이 필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거나 투자하고 싶은 새로운 매물이 나타나면 매각 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 예전에 드렸던 D 투자처 / 대출현황 정리한 것 끌을 합니다. (을22-41 4면).

(8) 2024. 4. 22. D의 F에 대한 감사 착수

2)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과 향후 원고 A 이탈의 영향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가) 내지 아)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1), (2), (3)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의 F 재직기간은 2026. 11. 2.까지이고(갑1 3면), 원고 A은 2024. 11. 11.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권한이 생기고(갑1 6면), 2025년도 행사 시 약 1천억 원(을22-33 4면)으로 추정된다. 2026년경 피고에게는 원고 A과의 재계약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원고 A이 2025년경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재직의 무기간 이전에 이탈할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 원고 A의 이탈은 그 자체로 F 가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원고 A의 이탈로 F가 ① 빈껍데기가 될지, ② 별다른 영향이 없는지, ③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을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 A은 '자신이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면 F는 빈껍데기 된다'는 가정(원고 A은 V에게 빈껍데기 취지의 발언을 2회 하였다)에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협상 시 V(당시 피고 대표이사) 등에게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풋옵션 행사하고 F에서 나가고, 제대로 보상해 주면 남아서 남자 G 그룹을 만들어 F의 가치를 몇 배로 높여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V 등은 원고 A이 재직기간 만료 이후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갔을 경우 F의 가치하락 가능성을 주된 위험으로 보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간 계약의 주된 쟁점인 '경업금지, 풋옵션 행사 가격'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 A이 F에 잔류할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나온 'F 독립 방안'은 수정된 주주간계약의 재직기간 이후의 문제로 남게 된다고 할 것이다.

가) 2024. 4. 16.자 AG증권의 D 기업분석 보고서(G로 본 멀티 레이블의 가치)에서 "G는 2022년 7월 데뷔 … 데뷔곡으로 AH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한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다. … 걸그룹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그룹은 AI 뿐이다. … 즉 AI도 빨랐다면 5년차에도 일부 달성할 수 있었던 수준인데, 현재 G의 국내 및 빌보드 성과를 감안할 때 최소 AI와 유사한 수준의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연간 영업이익은 1,000억 원 달성은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이 가능할 것이고 G는 여전히 데뷔 4~5년차에 불과할 것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배 수준의 타 레이블 대비 소폭 높은 멀티플을 부여한다면 F의 2년 내 적정 가치는 2조 원 내외가 될 것이다. 걸그룹의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I의 월드 투어 실적이 한 번에 반영된 AJ의 작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최고 시총이 약 1.8조원이었다. 추후 주가 하락은 AI의 재계약 리스크였음을 감안할 때 F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90 18-21면). 원고 A 측도 2024년 초 F의 시장 가치를 0.8조 원에서 1.5조 원(2024. 4. 17.자 카카오톡상 I가 만난 투자기관 근무자는 1.4조라고 말함)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AI의 실적으로 AJ 최고 시총 약 1.8조 원을 달성한 이후 AI의 재계약 리스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로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것이고 G를 AI에 견주어 2조원 내외로 추정한 것인데, 이는 G(재능), 원고 A(제작), 피고(경영) 3자 연합(계약)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평가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근거 없는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여 D의 시총 8,000억 원이 감소하는 정도의 간접 피해주었다'고 원고 A, B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였다. D 시총 약 8,000억 원 하락은[5] 양자 간 갈등의 전면적 표면화로 원고 A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2023. 12. 12.자 V과 (A)의 카카오톡에는 "(내가 나가면 ㅋㅋㅋㅋ 가치가 살아남아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살 밸류 책정해 놓고선 어이가 없네) A님 없으면 F 가치가 제로인데 권리는 10년이고 근속은 5년이야 (그럼 바로 걸렸죠 의리와 정을 믹스해 교묘했으니 1년 뒤 발칵) 뭔 소리야 하 (뭔 소리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구요 하는 내가 할 소리야 3자 법무법인 불러다 페어한 협상하든가 난 과도한 가치도 싫음 딱 정당하게 진행하고 싶음 난 이제 회의감) A님,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등치지 않았어요. 이 거래는 거래가가 확정된 거래도 아니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23).

라) 2024. 1. 25.자 미팅 녹취록 : A은 B, I, AK, V, AL가 있는 자리에서 (AK : … 100% 지분은 exit이 불가능한 상황이예요. 풋옵션 어차피 75%니까. 그러면 주주간 계약은 존속을 하고, 그러면 경업금지, 유인금지 의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하게

5) 피고의 주식 종가는 2024. 4. 22. 비교적 큰 폭(7.8%)으로 하락하였고 4. 22. - 4. 26. 주식 거래물량이 대폭 증가하였다(주식 종가 : 2024. 3. 7. 185,900원, 4. 2. 222,500원, 4. 3. 224,000원, 4. 4. 221,000원, 4. 15. 214,500원, 4. 16. 223,000원, 4. 17. 219,000원, 4. 18. 228,500원, 4. 19. 230,500원, 4. 22. 212,500원, 4. 23. 210,000원, 4. 24. 211,000원, 4.25. 212,000원, 4. 26. 201,500원). 이러한 주가 하락은 2024. 4. 22.자 AM언론 단독기사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어진 양측의 공방 격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피고는 업무상배임 고발사건에서 시총 8,000억 원 하락을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되는 결과가, 이 부분이 저희가 제일 걸립니다. …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 이 이슈도 있고요) … (V : … 그러면 5년 뒤에 행사를 하게 되면 asset은 안 나간 상태에서 그냥 … 풋옵션을 행사하고 회사는 A님 없는 상태에서 F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런 이슈가 있어요. 6면). (AL : 저희 입장에서는 A 님 모셔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액싯 100% 보장해도 되고, 했더니 바로 나가서 또 다른 회사 세운다 …) 아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9면). … 양심이 있다면 뽑아 먹지만 말고 … G 나오고 나서요. 사내든 사외든 전부 G를 따라하고 있어요. AN, Q 전부 G를 따라하고 있다고요. 남자 G 만들고 싶어서 난리라고, 저한테는 V님이 … 남자 팀 하셔야죠. 남자 팀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다 뺏길 걸 다 아는 상황에 미쳤다고 남자 그룹을 만들고 싶겠어요. … 그래서 그 당시에도 V님 한테나 남자 그룹 만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 줘. 이 회사가 내 가족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17면) … 밖에서는 다 G, G 얘기하는데 … 안에서는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지? 이런 박탈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회사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겠어. 도대체 니네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다고. … 어쨌든 저는 여지껏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나마라도 있는 시간 동안 … 혹은 … 진짜 이다음에라도 내가 이 회사랑 계속 … 일할 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려면 이 계약서 … 수정이 너무 필수인 거죠 … 말씀하신 대로 저 나간 다음에 껍데기[6]되는 회사를 들고 D 어떻게 하라고, … 저한테도 보상이 충분히 되고, 이 회사에 남아 있으면 이런 보장이 또 일을 수 있겠구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남자 그룹 키우면요. 이

6) "껍데기"란 용어는 2024. 1. 25.자 미팅 녹취록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앞의 "말씀하신 대로" 부분은 'V 측이 말씀하신 대로'로 보이나 해당 녹취록 앞에 "껍데기"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녹취록 앞 부분 V의 '그러면 5년 뒤에 행사를 하게 되면 asset은 안 나간 상태에서 그냥 …풋옵션을 행사하고 회사는 A님 없는 상태에서 F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런 이슈가 있어요" 부분을 언급하거나 2023. 12. 12.자 카카오톡에서 V의 "A님 없으면 F 가치가 제로인데"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 이 ×× 보다 내가 100배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을160 22~23면).

마) 2024. 3. 29.자 I와 (A)의 카카오톡 : (…AA -- AB이 F 탈출시키는 방법론을 쓰라고 …) AA나 Z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과 더불어 -- AB, AC, AD 같은 글로벌 자금 땡겨와서 D랑 딜하는 거죠 기존의 투자지분 넘겨주고 … D랑 딜하는 거죠. 어차피 시간 지나고 A대표님 풋옵션 행사하고 나가면 F는 빈껍데기 되는 건데, 그 전에 적당한 가치로 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각자 기존에 지분 투자했던 것들이 있으니, 이 지분을 D가 보유하고 있는 F 지분과 교환하는 거죠(2면). … D랑 딜을 하는 거죠. 기존에 투자한 지분을 넘길테니 F 지분을 달라구요. AA/Z 입장에서는 전망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리할 수 있고, D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F가 빈 껍데기로 전락하느니 그 전에 적당한 값 받고 파는 거니까 서로 win win입니다(을22-18 3면)

바) 2024. 4. 4.자 I와 [A]의 카카오톡 :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75% 행사 exit (23년 영업이익 : 335억 / 24년 약 500억, 평균 세전 약 1,000억 cash out). F는 빈껍데기 됨. G 권리침해 소송 진행.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A 대표님 + D에서 F 사오는 plan). D에 F 팔라고 권유. 적당한 가격에 매각. A대표님은 F 대표이사 + cash out한 돈으로 F 지분 취득 + 주주간 계약 새로 체결. 이렇게 되면 옛날에 못팔고 남겨 놓은 5%가 다시 쓸모가 있어지네요. [대박](을22-33 4면)

사) 피고 CLO AL의 증언 : (당시 관여자들은 원고 A에게 주는 멀티플 13배의 보상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나요) … 통상 그 정도의 멀티플 십 수배를 주는 경우에는 창업자가 회사를 D에 매각하고 남은 지분을 다시 추가로 팔 때 부여하는 멀티플 배수인데, 이 경우에는 D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한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정도의 보상을 주는 건 굉장히 높은 보상이라는 평가였습니다(3면). (이 사건 각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G의 데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금을 늘려달라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초 받기로 한 보상 규모가 15%였는데 그것을 30% 정도로 늘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었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10% 이상으로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그 규모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여 현물 주식을 20%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을126 5-6면).

아) 2024년 초에는 2025년경 원고 A이 풋옵션을 행사하여 약 1,000억 원의 현금(G 맘이란 일부 대중의 평가 포함)을 가지고 F를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원고 A의 이탈을 막고 G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해(지속될 경우 AG 증권은 F의 가치를 2조 원 내외로 추산함) 2023. 3. 보상과 같이 원고 A의 추가적인 보상요구에 응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7]

3) F 빈껍데기의 의미 및 피고와 협상, 동의를 전제로 한 매수 등

가) 피고는 F 빈껍데기 문구는 원고 A, B이 G를 데리고 나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한 의미(G 빼가기)라고 주장한다.[8]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의 F 빈껍데기 발언은 '원고 A이 풋옵션

7) 2023. 12. 12.자 V과 (A)의 카카오톡에는 "(내가 나가면 ㅋㅋㅋㅋ 가치가 살아남아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살 밸류 책정해 놓고선 어이가 없네) A님 없으면 F 가치가 제로인데 권리는 10년이고 근속은 5년이야 (그럼 바로 걸렸죠 의리와 정을 믹스해 교묘했으니 1년 뒤 발칵) 뭔 소리야 하 (뭔 소리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구요 하는 내가 할 소리야 3자 법무법인 불러다 페어한 협상하든가 난 과도한 가치도 싫음 딱 정당하게 진행하고 싶음 난 이제 회의감) A님,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등치지 않았어요. 이 거래는 거래가가 확정된 거래도 아니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갑23).

8) 피고 CLO AL는 "그런데 두 사람 간에 카카오톡에서 '2025. 1.에 풋옵션 행사에서 껍데기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문언 상으로 '원고 A이 빠져나간 G'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껍데기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티스트가 빠져 나가는 걸 말하니까 F라는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고 표현 했겠죠 (G 멤버들 전속계약은 해지하고 그 다음에 풋옵션 해서 빠져나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가 다 되어야 빈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G가 빠져나가면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풋옵션 행사하는 건 D가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F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빈껍데기가 되는 건 아니죠"라고 증언하였는바(을126 45면), AL는 '원고 A이 G와 F의 전속계약을 해지시켜 데리고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행사하고 나가면 F는 빈껍데기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원고 A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 결렬을 조건으로 2025년경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면 F는 빈껍데기가 되고 투자자를 동원해서 피고와 협상을 통해 F 지분을 매수(0.8조 ~ 1.5조 원)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9)]

피고 주장대로 'G 빼가기'라면 원고 A이 2025년 이후 F에서 이탈하여 원고 A과 G 멤버가 없는 F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F를 0.8조~1.5조 원에 매수하거나 상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G 빼가기'라면 새로운 소속사 물색(설립 포함)과 전속계약해지소송 대비 전략 등이 카카오톡의 주된 흐름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카카오톡은 전속계약해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F 지분 매수나 상장 방안'을 주된 흐름으로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 측이 G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주장대로 'G 빼가기'라면 원고 A이 2025년 이후 이탈하여 원고 A과 G 멤버가 없는 F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F를 0.8조~1.5조 원에 매수하거나 상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G 빼가기'라면 새로운 소속사 물색(설립 포함)과 전속계약해지소송 대비 전략 등이 카카오톡의 주된 흐름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카카오톡은 전속계약해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F 지분 매수나 상장 방안'을 주된 흐름으로 형성하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 A 측이 G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9) 2024. 1. 24.자 I의 카카오톡에 "F가 먼저 한 3000억 짜리 회사 살거니까 D야 우리 외부 투자 받게 승낙해줘 이렇게 외부 투자를 받은 다음 이들을 백기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 F에 우호적인 외부 지분을 확보해 두면, D가 맘대로 F 망가뜨리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는 문구가 등장한다(을22-2 11면). 백기사는 '기업들간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진행되는 경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를 백기사(white knight)라고 부른다. I는 F 독립 방안으로 기업 인수·합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문제는 F가 비상장주식으로 피고의 지분 매각 결정이 있어야 외부 투자가 가능하고(갑86 AO 대표 AP의 2024. 5. 22.자 사실확인서 2면), 설령 피고가 매각 결정을 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우호적인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I의 바람대로 외부 투자자가 원고 A 측의 백기사가 될지는 의문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이유 없다.

(1) 2023. 12. 12. A과 (V)은 카카오톡으로 "내가 나가면 ㅋㅋㅋㅋ 가치가 살아남아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살 밸류 책정해 놓고선 어이가 없네 (A님 없으면 F 가치가 제로인데 …) … 1년 뒤 발칵 (뭔 소리야 하)"라고 대화하였다(을92). 2024. 1. 25. A은 V 등에게 주주간 계약 수정 협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 나간 다음에 껍데기 되는 회사를 들고 D 어떻게 하라고"라고 말하였다(을52 22~23면). 2024. 3. 29.자 I와 A의 카카오톡에는 "어차피 시간 지나고 A대표님 풋옵션 행사하고 나가면 F는 빈껍데기 되는 건데"라고 기재되어 있다(을22-18 2면).

(2) I와 A의 2024. 3. 14.자(을22-10 6-7면) 및 2024. 3. 15.자(을22-11 1~2면) 카카오톡 내용은 '외부 투자자의 권유에 따라 멤버 탈퇴에 따른 위약금을 4,500억 원 ~ 6,200억 원으로 추산해본 것으로 보이고, 과거 앨범과 광고 계약이 F에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8천억 원 정도에서 F 지분 인수를 협상하는 방안이 낫다는 취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2024. 4. 4.자 카카오톡에서도 'G 전속계약해지는 F의 여러 에셋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을22-32 2면). 이렇게 원고 A 측은 멤버 탈퇴 방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3) (A)과 I의 2024. 3. 31.자 카카오톡에 "(이거 D 앞으로 엄마들이 쓴 걸 우리가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흠 혹시라도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주장할 때 F의 귀책사유가 걸려 있어야 될 거 같아서 To.가 F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른가)"라는 대화 내용이 있는데(을22-25 9-10면) "혹시라도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주장할 때"라는 가정 문구이고 엄마들의 항의 대상을 누구로 기재할 지를 정하는 문제로 보이므로 이 카카오톡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4) 2024. 4. 4.자 I와 [A]의 카카오톡에는 "G가 F와 계약해지를 하고 이 일로 인해 F가 D에 소송, 동시에 주주간 계약으로 소송해 계약 무효화 해 함께 탈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럼 F는 껍데기만 남아 구보나 여러 에셋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생김 …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75% 행사 exit(23년 영업이익 : 335억 / 24년 약 500억, 평균 세전 약 1,000억 cash out). F는 빈 껍데기 됨. G 권리침해 소송 진행.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A대표님+D에서 F 사오는 plan). D에 F 팔라고 권유. 적당한 가격에 매각. A대표님은 F 대표이사 + cash out한 돈으로 F 지분 취득 + 주주간 계약 새로 체결. 이렇게 되면 옛날에 못팔고 남겨 놓은 5%가 다시 쓸모가 있어지네요. [대박]"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을22-33 4면). 원고 A과 I의 카카오톡 대부분은 '향후 원고 A이 풋옵션 행사하고 나가면 F가 빈껍데기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F 지분을 저가에 매수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5) 2024. 2. 22.자 W와 (V)의 카카오톡에는 "A이 AQ 이용해서 자기가 최대 주주되고 ipo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던데. AQ는 F로 프리 ipo 딜 만들어내고 (네 그러라고[10] 하죠 뭐 AQ가 D 주식사고? ㅎㅎ D가 보유한 F 주식을 AQ가 사고?) 구주 신주 섞고 A에 콜주고 (어디 AQ가 붙었나요?) … A씨의 욕심도 있겠지만 AQ가 부추기는 면도"라고 기재되어 있다(을125). V은 원고 A의 F 주식상장 방안 모색에 대하여 "네 그러라고 하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4. 2. 22.경 V은 F의 독립 방안 모색 사실을 알고 알았음에도 2024. 4. 3.자 및 2024. 4. 16.자 항의메일을 받을 때까지 투자자 접촉 자제 촉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V은 추가 정보 수집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런 효

10) 카카오톡에는 "그거라거"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문이다. 뒤에 구체적 방안 언급 등 문맥상 "그러라고"로 읽힌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F 독립 방안 모색을 중대한 의무위반이라고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6) ① 2024. 1. 24.자 I와 (A의) 카카오톡에는 "IPO 시킨다고 D에 **허락** 받고 3천억 쯤 외부에서 땡겨와서 이런저런 회사들 … 사와서 (음. 저걸 사는 건 놔두냐) 투자 받는 걸 **동의** 받아야죠", ② 2024. 3. 14.자 카카오톡에는 "전속계약 … 해지 … 다만 현재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중요한 계약의 변경, 해지, 갱신은 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75), ③ 2024. 3. 15.자 카카오톡에는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8천억** 정도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노우, 예넨 미래가치를 넣지 … 그러니까 미래가치 산정액으로 **1조** 넘게 부르지 … G를 8천억에 주겠니?) 네 제가 D라면 **1.2조~1.5조** 부를거 같아요"(을22-11 1~2면), ④ 2024. 3. 29.자 카카오톡에는 "AA나 Z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과 더불어 -- AB, AC, AD 같은 글로벌 자금 땡겨와서 D**랑 딜**하는 거죠 기존의 투자지분 넘겨주고 … D**랑 딜**하는 거죠"(을22-18 2면), ⑤ 2024. 4. 17.자 카카오톡에는 "F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는데, 현재 기준으로 USD 1billion(약 **1.4조**) 이면 당장 투자하고 싶고,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 많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을22-41 4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 A 측은 피고 D와 협상을 하고 동의 받아 F 지분을 매수(0.8조 ~ 1.5조 원)하거나 F 상장을 통해 지분 참여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주주 등 투자자를 통해 D 주식 판매 협박 문구

가) 2024. 3. 15.자 I와 (A)의 카카오톡에는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8천억 정도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노우, 예넨 미래가치를 넣지 … 그러니까 미래가치 산정액으로 1조 넘게 부르지 … G를 8천억에 주겠니?) 네 제가 D라면 1.2조~1.5조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를 거 같아요 … (협상재료가 강력한 게 있다면 이게 가능하지 개 같은 치부나) Z 카드 하나 가지고 있죠 (협상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조건) 너네 F 우리한테 안 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네 주식 다 팔거다 **협박** 7,000억 어치 들고 있어요 (이게 협박꺼리가 되니?) 협상카드는 될 거 같은 데요 (너네 주식 다 팔꺼다 이거)"(을22-11 1~2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카카오톡상 '너네 F 우리한테 안 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네 주식 다 팔거다'라는 문구 자체가 해악의 고지인지 의문인 점, 이에 대한 원고 A도 당시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Z에 대한 원고 A의 영향력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실현가능성도 의문이거니와 이를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도 어렵고, 단지 Z가 F 지분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가정하여 D 지분과 F 지분을 교환하는 협상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I도 협상카드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5) 투자자 접촉 정황

가) AO 대표 AP의 2024. 5. 22.자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F에 새로 VP[11]로 부임한 지인이 … 조언을 구하여 … 조언을 하였을 뿐입니다. … AR 측 담당 임원도 어떠한 경위인지 F와 D 간의 갈등을 대략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과 해당 임원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해결방안으로 F의 IPO 방안을 아이디어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2024년 2월 12일경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당시 D와 F가 IPO를 공통의 목표로 삼으면 그러한 갈등 구조가 해결될 수 있으니, 엔터테인먼트 투자경험도 있고 D와 네트워크가 있는 AR 임원(AR 대표이사 W는

11) F 부사장 I를 가리킨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D 사외이사임)에게 AR가 한번 투자해 보는 것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 이러한 논의는 F 경영진들로부터 요청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투자업을 전문으로 하는 두 사람 사이에, 늘상 그렇듯이 또 다른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F 같은 비상장 회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와 기존의 주주가 모든 조건을 합의해야 하고 투자금액과 단가는 물론 검토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받아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데, 본인을 비롯한 본인 회사는 F는 물론 D와 그와 관련한 어떤 협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86).

나) 이는 2024. 2. 22.자 W와 (V)의 카카오톡 문구[12]와 일치하고 W의 경찰 진술서(3,000억 원 정도 펀딩을 해서 D가 보유하고 있는 F 지분을 노틱이 사오는 방식) 문구와 일치한다(을23 11면). 이는 2024. 1. 24.자 I와 A의 카카오톡[13]에 언급된 'F IPO'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해당 카카오톡에서 'IPO 시킨다고 D에 허락받고 3천억 쯤 외부에서 땡겨 와서 … F IPO는 D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I는 F의 독립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AP을 만나 F의 주식상장 방안 아이디어와 투자처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 CLO AL의 진술대로 G의 성공으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파격적인 보상(지분 20%와 멀티플 13배 보장)을 한 정황에 비추어 G의 성공이 지속되

12) 2024. 2. 22.자 W와 (V)의 카카오톡에는 "A이 AQ 이용해서 자기가 최대주주되고 ipo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던데. AQ는 F로 프리 ipo 딜 만들어내고 (네 그러라고 하죠 뭐 AQ가 D 주식사고? ㅎㅎ D가 보유한 F 주식을 AQ가 사고?) 구주 신주 섞고 A에 콜주고 (어디 AQ가 붙었나요?) … A씨의 욕심도 있겠지만 AQ가 부추기는 면도"라고 기재되어 있다(갑182).

13) 2024. 1. 24.자 I와 [A]의 카카오톡 : 임원 해임이나 정관변경, 인수 합병, 영업 양수도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데, 이것들은 의결권의 2/3 (66%)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 하면 D 지분을 66%로 낮출 수 있으면 D 지분을 66%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면 방어가 가능해 져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Plan B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전략인데요. Plan A : 빠르게 & 높은 가격으로 exit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 Plan B : 대마불사 전략. 사업다각화 해서 IPO 시킨다고 D에 허락받고 3천억 쯤 외부에서 땡겨와서 이런저런 회사들(ex. X / Y / 일본 스트리트 브랜드 등등) 사와서 똘똘 뭉쳐가지고 D가 못건드리게 하는 거죠 (음. 저걸 사는건 놔두냐) 투자 받는 걸 동의 받아야죠. [그니까. 그걸 놔두겠나고] D 입장에서도 F가 IPO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E처럼 4조 value로 IPO 하면 지네가 들고 있는 지분가치가 2.5조 되는 거라 절반만 팔아도 또 한번 돈 ㅈ ㄹ 가능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플랜 B입니다. [ㅋㅋㅋㅋ] 이렇게 판 키우시는거 안좋아하시는거 알고. (갑36 11면, 을7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고 원고 A의 재직기간이 종료되면 피고는 재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원고 A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14] 2023. 3. F 지분 이전 방식과 유사한 지분 이전(지분 매매)이나 AP이 제안하는 F 주식 상장를 통한 지분 참여 기회 제공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방안도 결국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이 결렬되고 원고 A이 F를 이탈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의 동의를 가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부동의 하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에 불과하고 향후 원고 A의 이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물론 원고 A의 일부 사익적 동기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으로 미리 모색하는 행위 자체가 F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다.

라) 이와 같이 원고 A, B은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여 F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나[15] 이들 모두 피고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피고가 부동의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

14) 2023. 12. 12.자 V과 (A)의 카카오톡에는 "(내가 나가면 ㅋㅋㅋㅋ 가치가 살아남아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살 밸류 책정해 놓고선 어이가 없네) A님 없으면 F 가치가 제로인데 권리는 10년이고 근속은 5년이야 (그럼 바로 걸렸죠 의리와 정을 믹스해 교묘했으니 1년 뒤 발칵) 뭔 소리야 하 (뭔 소리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구요 하는 내가 할 소리야 3자 법무법인 불러다 폐어한 협상하든가 난 과도한 가치도 싫음 딱 정당하게 진행하고 싶음 난 이제 회의감) A님,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등치지 않았어요. 이 거래는 거래가가 확정된 거래도 아니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갑23).

15) ① I로부터 부탁을 받은 AO AP은 2024. 2. 22. AR에 접촉하여 'F 경영진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도모 중인데, 피고 대표이사를 잘 알면서 피고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AR W 대표가 피고 대표이사를 설득해서 F 지분을 AO에 팔게 도와달라.'고 제안한 점(을125), ② I는 2024. 3. 15. 원고 A에게 피고의 4대 주주인 Z를 이용하는 방안, 즉 "Z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가 보유한) F 지분을 우리에게 팔지 않으면 우리가 보유한 피고 지분을 팔겠다'는 협박을 하도록 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F 지분을 팔게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하자 원고 A이 '아는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응한 점(을22-11), ③ I는 2024. 3. 19. AS을 만나 '조 단위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일지' 논의하였고, AC과 AD를 소개받아 원고 A에게 이를 보고한 점(을22-14), ④ 원고 B은 2024. 3. 18. I에게 AT 소개자료를 전달하고, I는 AO AP에게 위 그룹에 대하여 평판 조회를 하였고, 이후 I는 AP에게 AT이 '짠주(쩐주)로 입후보하였다'고 밝힌 점(갑128, 129), ⑤ I는 2024. 3. 29. 원고 A에게 '피고를 흔들 연결고리를 하나 더 찾은 거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증권사(AB)를 이용해서 피고를 압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듣고 원고 A은 I에게 '투자처 정리 좀 해 줘봐 투자액과 1~10위 정도'라고 지시한 점(을22-18 *면), ⑥ 원고 A은 2024. 3. 29. 피고 자회사이자 F의 계열회사인 AU의 2대 주주인 AA 대표이사 AV에게 "(AU의) 지분을 털고 나가자"는 계획을 설명하였고, I에게 AV에게 말할 내용으로, "AA, AB이 F 탈출시키는 방법론"을 잘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으며, I는 'AA가 피고의 계열사 AU에 투자한 지분을 넘길테니 F의 지분을 달라고 피고에게 딜을 제안해보라'는 내용을 정리한 점(을22-17, 18), ⑦ I와 AW은 2024. 4. 17.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AX의 AY를 만나 피고에 대한 험담을 하고, F의 가치와 F에 대한 투자방법을 논의하였고, I는 위 미팅 후 원고 A에게 위 미팅 사실을 알리며 '투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피고가 돈이 필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보고한 점(을22-41)이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6. 원고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업무수행과 경영성과

위 인정사실과 각 사정 및 증거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F 업무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측은 2023년에 G의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F 지분 20%와 멀티플 13배를 받았고 2024년에도 2023년와 유사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파격적 보상과 추가 보상 대상 이지만 2024년도에는 신뢰가 중대하게 파괴되었다는 주장인데 의문이다. 원고 A의 2024. 10. 17. 자 사내이사 재선임 정황도 중대한 신뢰파괴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

가. G는 2022. 7. 22. 데뷔 직후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F는 2022년 매출액 약 186억 원 및 영업손실 약 40억 원, 2023년 매출액 약 1,102억 원 및 영업이익 약 335억 원, 2024년 매출액 약 1,111억 원 및 영업이익 약 308억 원을 달성하였다. F의 3개 연도 영업이익 합계는 약 603억 원이다. D의 G에 대한 투자액은 약 210억 원이다.

나. G의 성공으로 피고는 2023. 3. 27. 원고 A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 측 지분으로 20%를 인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멀티플 13배를 보장해 주었다. 통상 그 정도의 멀티플 십 수배를 주는 경우에는 창업자가 회사를 D에 매각하고 남은 지분을 다시 추가로 팔 때 부여하는 멀티플 배수인데, 이 경우에는 D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한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그 정도의 보상을 주는 건 굉장히 높은 보상이라는 평가였다(을126 3면).

다. 2024. 4. 16.자 AG증권 리서치센터의 D 기업분석 보고서(G로 본 멀티 레이블의 가치)에서 "G는 … 데뷔곡으로 AH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한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다. … 걸그룹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그룹은 AI 뿐이다. … 즉 AI도 빨랐다면 5년차에도 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부 달성할 수 있었던 수준인데, 현재 G의 국내 및 빌보드 성과를 감안할 때 최소 AI와 유사한 수준의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연간 영업이익은 1,000억 원 달성은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이 가능할 것이고 G는 여전히 데뷔 4~5년차에 불과할 것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배 수준의 타 레이블 대비 소폭 높은 멀티플을 부여한다면 F의 2년 내 적정 가치는 2조원 내외가 될 것이다. 걸그룹의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AI의 월드 투어 실적이 한 번에 반영된 AJ의 작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최고 시총이 약 1.8조원이었다. 추후 주가 하락은 AI의 재계약 리스크였음을 감안할 때 F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90 18-21면).

라. 2024. 4. 15.자 I와 (A)의 카카오톡 : <시나리오2> 24년 5월 : 싱글1 발매 + 음방활동, 6월 : 싱글2 발매 + 일본음방 + AE 팬미팅, 7월 : 한국음방 + 데뷔 2주년, 8월 : 휴식 + 하반기 광고 쳐내기 + 9월~10월 AF 대관 시도, 9월 : 앵콜 팬미팅 / 개최공지, 10월 : 앵콜 팬미팅 / 예판공지, 11월 or 12월 : 앨범판매 + 음방 + 월드투어공지 + 25년 월두투어 (그러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음반을 내면 낸다고 했으니까 12월안에 내야 하잖아 발매일 12월에 찍혀야하지 않냐 아님 1월 발매 12월 홍보해도 되나). (갑76 4-5면) 이에 비추어 원고 A은 2024. 4. 15.경 적어도 2025. 1.까지 F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획하였다.

마. 원고 A은 피고와 분쟁 진행 중인 ① 2024. 5. 24.과 2024. 6. 21.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서로 다른 앨범들을 연달아 발매하였고, ② 선행 가처분 결정 직후인 2024. 5. 31.에는 기자회견에서 소모적인 주주 간 갈등을 그만두고 F와 G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화해를 제안하였으며, ③ 2024. 6. 26.부터 양일간 G의 2024년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던 AE 공연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F는 2024년 매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액 약 1,111억 원 및 영업이익 약 308억 원을 달성하였다. 이는 2023년 매출액 약 1,102억 원 및 영업이익 약 335억 원과 유사하다.

바. 피고는 2024. 7. 8.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F의 이사회는 2024. 8. 27. 원고 A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는 2024. 9. 20. 원고 A에게 콜옵션 행사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24. 9. 13. F의 대표이사로 복귀하고자 '사내이사 재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2차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고 A은 2024. 9. 28.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AZ에게 '소모적인 주주간분쟁으로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G) 모두 상처를 받았으니, 더 이상의 분쟁을 종식하고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한 자세로 협의해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F의 2024. 10. 1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A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주주간계약 해지를 지향하고 있고 원고 A은 계약 유지를 지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원고 A의 의무 재직기간인 2026. 11.까지는 갈등을 내부화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F의 성장 발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16] 그럼에도 피고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 A 측의 여론전 등 저가 매도 압박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

7. 여론전 등 저가 매도 압박 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

16) 피고의 동의가 없는 원고 A 측의 F 독립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F 지분 매도나 상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명하고 감사 강화 등을 통해 원고 A의 충실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카피 문제 등은 F 측 설득 과정을 통해서 모회사 내부 문제로 해결하는 시도가 F의 성장과 발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2)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기에는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들은 각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므로,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나. 카피 문제제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 A, B이 피고에 대하여 'R의 G 카피' 문제제기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1) 2024. 4. 22. "BA"이라 제목으로 "R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G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R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G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R은 'A 풍', 'A 류', 'G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F의 공식 입장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을353 5면). 'R이 G를 카피하였다'는 취지로 개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R의 전체적인 인상이 G와 유사하다는 취지여서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허위사실 유포 주장은 이유 없다.

2) ① 2024. 3. 25. R의 데뷔를 전후하여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G 안무나 컨셉 카피 이슈'가 화재가 되었다(을351).[17] ② 피고 직원은 Q 직원의 요청을 받고 G 기

17) ① 실제 R 데뷔(24.3.25.) 이후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G 안무 컨셉 카피이슈'가 화재가 되었으며(을352 경찰의 불송치의견서 13면). ② 원고 A과 피고 소속인 아티스트인 BB 멤버 BC는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 받았다(갑46 원고 A과 BB 멤버 BC의 카카오톡대화). ③ R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은 D의 BD 의장이 맡았다. R은 데뷔와 동시에 화제였다. 그룹 정체성과 스타일링, 안무, 뮤직비디오 등이 G와 유사해서다. "A 대표가 R 제작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을353 BE 기사 2면). ④ R이 G의 노하우를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인들이 데뷔할수록 성과들이 계속 좋아지는 시스템적인 성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16면). … 데뷔한지 불과 1달도 안 된 R의 데뷔 성과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데뷔 전 1명이 탈퇴 5인조가 되었고 메인 보컬(고음)을 부각 시키지 않는, 혹은 포지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가는 등의 형태가 G와 유사하다(25면)(갑90 2024. 4. 19.자 AG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획안을 전달하였고[18] G 기획안이 R 제작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G 부모들도 그 유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였다(갑8). G의 부모들은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갑12-1)에서 'G의 부모들이 원고 A에게 R의 G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19] 설령 원고 A 측이 부모를 설득하여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필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서명 날인한 이상 이는 해당 부모의 의견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A 측이 허위사실 등으로 부모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자료의 제시도 없어 보인다(카피문제제기는 의견 표명이므로 사실을 전제로 하는 부모들의 착오가 성립될지도 의문이다). ④ Q의 대표이사는 2024. 4. 16. R 카피 의혹 제기에 대하여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 또한 그에 상응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도 말씀 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

3) R 데뷔 이전 데뷔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G와의 유사성 논란이

---

18) 피고 소속 스토리텔링팀에서 근무하였던 BF은 BG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H의 요청을 받고 G 기획안(을31)을 전달해 주었고 2024. 6. 20. (B)과 "(BI에 그러면 이거 BJ님한테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원래 BJ님 하고) 아. BH님이요. BH님 (BH님이요?) 네, BH님이요)(5면) … 우선 그래서 그때는 그때 이제 막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하셔 가지고 (네) 제가 그때 보고 엄청 감명 깊어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보여드렸어요. (네) … 저는 그 자료가 굉장히 그룹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때 보여드렸었어요. (그 BH님이 공유해 달라고 하신 거군요?) 네네, 네, 맞아요 … '이거 유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 … 이게 막 Q에서 영상 올리고 하는 거 보면 …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 … 그때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냥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 그리고 저한테는 '아,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작업 상황이 제가 어떤지는 좀 알기 어려운 것 같고 … 다만 그 때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렸던 거는 너무 갈피를 못 잡고 계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충 됐는데 저한테 우는 소리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실질적인 작업의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라고 통화하였다(갑47 원고 B과 제보자 간 2024. 6. 20.자 통화 녹취록).

19) 이 문제는 모회사 안 레이블에서 데뷔한 R이 G 데뷔 때와 제적 포뮬러를 똑같이 하고 디자인 로고 카피, 컨셉을 모방하여 프로모션까지 비슷하게 하여 대표임께 건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갑12-1 탄원서 15면)

20) Q 대표이사는 2024. 4. 16. R 카피 의혹 제기에 대하여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 또한 그에 상응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도 말씀 드립니다. 특히 R의 음악과 콘텐츠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 제기되었던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은 전체 콘텐츠가 공개되고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크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비슷하지 않다',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의견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Q 대표이사는 적어도 R 데뷔 전에는 R이 G와 '비슷해 보인다'와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R 데뷔 이후 '비슷하지 않다',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의견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Q은 2024. 6. 10. 원고 A의 카피 의혹을 반박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으로 인하여 카피 의혹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카피 문제는 2024. 10.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제로 선정되어 감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제기되었고, Q의 대표이사의 답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를 피고 D나 Q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 등은 F 측과 이 문제로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한 적이 없어 보인다. 같은 모회사 산하 레이블이 데뷔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G와 유사한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는 걸그룹을 데뷔시키면 모회사인 피고 D 입장에서는 G와 R의 상승효과(synergy, AG증권은 유사성 요소를 D 주가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21]가 자기잠식효과(cannibalization)[22]를 넘어서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반면, G 소속 F 입장에서는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경쟁자의 출현으로 시장을 잠식당하게 될 우려가 발생한다.[23] F가 1인 회사라면 주주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원고 A 측이 F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걸그룹 간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 물론 양자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 자체를 확장하는 효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F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여지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21) AG증권 리서치센터 2024. 4. 19. "D G로 본 멀티 레이블의 가치"라는 제목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90).
BK는 2024년 1월 데뷔한 그룹임에도 이미 달성한 성과가 훌륭하다. … 2020년 이후 D의 남자 그룹 중 BB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월간 TOP3에 진입한 그룹이며 데뷔 2달만에 달성했다. 음반에서도 강력한 성장세가 확인된다. … BK의 2025년 이후를 전망하기 이전에 D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BL와 BK의 데뷔곡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다. 유사한 흐름이 느껴진다. BK의 타이틀에서도 느껴지듯이 첫 만남이란 단어와 뮤직비디오 내 학교/교복/운동장 등은 확연히 10대를 타겟하며, BM의 2집 <BN>와 유사한 느낌이다. BL는 이름부터 옆 집 소녀이며, 이미 2번의 앨범에서 학생들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번 컴백에서 첫사랑에 대한 3부작을 마무리한다. BK의 첫 번째 앨범과 BL의 2번째 앨범 판매량은 유사한 50만장 내외이나, BK의 음원 순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멀티 레이블 체제 하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노하우들이 누적되면서 갈수록 높은 시너지를 내면서 BL의 향후 음원 순위 역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R이 G의 노하우를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인들이 데뷔할수록 성과들이 계속 좋아지는 시스템적인 성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16면). … 데뷔한지 불과 1달도 안 된 R의 데뷔 성과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데뷔 전 1명이 탈퇴 5인조가 되었고 메인 보컬(고음)을 부각 시키지 않는, 혹은 포지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가는 등의 형태가 G와 유사하다. G, BO, BP, BQ 등 매우 치열한 걸그룹 경쟁 환경까지 겹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뷔곡은 AH 1위, 빌보드 100에서는 102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AN의 BK에서도 언급했지만, D에서 데뷔하는 대부분의 신인 그룹들이 이전 타 그룹들의 데뷔 성과를 지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성장 잠재력이 더 높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향후 신인 그룹들의 흥행 변수가 타 기획사들 대비 상당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화되고 있다는 점은 올해 1분기에서만 2팀의 신인 그룹의 데뷔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25면).

22) 마케팅 용어 : 신제품이 자사의 기존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뜻한다. 한 기업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나 기술이 기존에 그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던 다른 제품이나 기술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해당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23) R의 BR가 걸그룹 개인 트렌드 지수 순위 발표 결과 1위를 차지했다. R 멤버 5명은 모두 드렌드지수에서 1~5위를 나란히 차지하며 대세로 떠올랐다. 한솥밥을 먹는 D의 G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던 BS에서 R이 G 전 멤버를 제친 것이다(갑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F 입장에서 카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카피 문제는 의견 표명으로 사실을 전제로 한 착오가 성립할지도 의문이다).

4) 창작 윤리 측면에서도 카피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측도 카피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ex R은 카피를 한 적이 없다. G 또한 카피로 볼 수 있다는 등)를 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A이 제기한 컨셉 등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방식이 아니라 아이디에 불과하다. 이러한 컨셉의 독창성이 법적 보호를 받지는 못할 지라도 원고 A 측이 제기하는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소될 문제로 보인다. 당사자 사이에 컨셉 카피 문제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 위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을353 원고 A은 'G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다. 누가 누구의 동생 그룹이니 하는 식의 홍보도 결코 용인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5) F와 G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G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F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F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G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F의 대표이사인 원고 A은 F의 핵심 자산인 G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A이 R과 G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고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고 A 측이 제기한 G 카피 문제는 F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다. 밀어내기 문제제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 A, B이 피고에 대하여 '밀어내기'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1) 2024. 5. 17.자 BT언론 기사에 "BU"는 제목, "BV"이란 부제목으로" … G는 음반밀어내기를 D로부터 권유 받은바 있습니다. G는 CJ 음반 발매시 D로부터 BQ 초동기록을 꺽을 수 있다며 10만장 밀어내기를 권유 받았으나 F의 사업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 이미 D레이블 내 만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회사에 대하여 반품 조건부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음반밀어 내기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라는 F의 2024. 4. 16자 F의 입장문이 보도되었다(갑7-2, 을52).

2) ① 피고 대표이사 V은 F에게 G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24] 2023. 8. 4. D 재팬 경영기획 팀장 또한 '물량 밀어내기' 용어를 사용하는 등 D 사내에 밀어내기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어 보이는 점,[25] ② 원고 A의 문제제기 이후 D는

24) B은 카카오톡에서 "(D 재팬에 물량 떠넘기기 한 거 같은데 알고 있음?) 아뇨 그렇지만 V님이 일전에 일본으로 물량 밀어볼 수 있다는 얘긴 한 적이 있네요 (우리한테? 우리는 한 거 없잖아) 한국 음반을 일본에서 사 가는데 더 많이 사가게 푸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었어요 (와 우린 안했지?) 네 안한다고 했어요 (이건 V이 먼저 말했을 꺼 아냐) 네 V님이 말 꺼냈어요 … (왜 굳이 말꺼낸거야? 당시 슬랙 있어?) 아뇨 구두로 했고요 (옥상에서) 저희 CJ 앨범 초동 때 저 얘기 꺼냈었어요. … 생각보다 안 나간다고 얘기할 때 즈음이었는데 … 저희 찍은 것 보다 안 나간다고 V님이 걱정했었잖아요"라고 대화하였다(갑43). V은 2024. 4. 22.자 이메일에서 "A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D로부터 'G가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격의 없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었을 뿐이며"라고 진술하였다(을134 2면). B의 카카오톡 내용에서 앨범, 옥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V도 그런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5) 2023. 8. 4. D 재팬 경영기획 팀장 BW은 I에게 슬랙으로 "BX가 직사입시 : D 이익이 가장 크나 재고부담 주체가 BX가 됨 / 마케팅 & 프로모션 부담 주체는 BX, BY 통합시 : 레이블 이익이 상승하나 물량 밀어내기 불가능하고 재고부담 및 폐기도 레이블 비용으로 진행 / 마케팅 & 프로모션 부담 주체도 레이블"이라고 답변하였다(을34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자체 감사를 통해서 2023년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가능한 구조로 판매되어 실제 반품을 확인하고 이러한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회사 규정으로 재발 방지규정을 제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6] ③ 2024. 10. 24.자 국정감사에서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초동 물량(앨범 발매 이후 1주일 간 판매 물량)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D 내부 문건 2건[27] : 초동 관련 … 추가 10만장 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공연이후 반품 가능한 조건으로 진행, 반품 조건 사업 4건 사례 언급)이 제시되어 보도 되었고 피고 소속 최고운영책임자 BZ는 국정감사에서 2024. 4. 22.자 D 대표이사 V 이메일과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한 점,[28] ④ 초동 물량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V이 G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D 레이블 내 만연한 일로 알고 있다' 부분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의견을

---

26) D는 금번 제기된 이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 판매한 앨범 전체에 대해 밀어내기를 통한 반품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 드립니다. … 우선 2023년 D 아티스트들은 17개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2023년은 음반 판매량이 요동친 해였습니다. 당시 앨범 판매가 호조였던 상황을 감안해 상향된 수요 예측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과거보다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반품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을134 2024. 4. 22.자 D 대표이사 V 이메일).

27) … 초동 관련 April 10th 2023 … 추가 10만장 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공연이후 반품 가능한 조건으로 진행할거 같습니다 … 일본에서 일단 25만장 수준으로 보내는 거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품 조항을 넣어서 판매부진시에는 반품 가능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 일본 25만장일 때 초동 기간 내 국내 물량 이슈가 크지 않은지만 검토 부탁드려 볼께요 … 반품 가능(예정 및 진행) 수량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수당 관련 레이블과 협의 안건이기에, 혹시 몰라 반품조건의 이력도 참고드리고자, 완료된 프로젝트도 기재하였습니다. … 반품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는 BY사업수량(이니셜)에는 미포함이고 BX에서 재고부담으로 추가사업된 물량입니다. …
· CA 이니셜 사업 15만, 반품조건 추가 사업 10만, CB 25만, 추가사업 10만은 반품 완료 현재 재고 없음
· CC 이니셜 사업 16만, 반품조건 추가 사업 7만, CB 23만, 반품작업진행 중
· CD 이니셜 사업 50만, 반품조건 추가 사업 15만, CB 65만, 반품작업진행 중
· CE 이니셜 사업 25만, 반품조건 추가 사업 20만, CB 45만, 반품작업진행 중

28) 피고는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반품 조건부 판매가 일부 이루어 졌다는 입장이나, 그 경우라도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실의 암시라고 보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반품 조건부 거래로 의심되는 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한 대책 강구 촉구'라는 주된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대표이사가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는 G 조차도 밀어내길 권유할 정도면 다른 그룹은 더 많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4) 결국 원고 A의 밀어내기 문제제기로 D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반품이 가능한 판매방식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음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로 보인다. 초동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를 통한 시정 촉구는 공정한 음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이 있고 이는 F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으로 F 대표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문제제기도 F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5)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이 제기한 'D로부터 밀어내기 권유를 받았다'는 부분은 대기업인 피고에 대하여 음반 시장 질서를 교란할 만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 사항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만연하다'는 표현을 사실의 암시로 보더라고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29)]

6)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525 판결

29) A의 밀어내기 문제제기가 허위사실 유포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다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제기에서 더 나아가 D 내부문서 2건을 제시하며 음반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초동 음반 밀어내기를 단정하는 듯한 문답 과정도 허위사실 유포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해당 국정감사 보도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는 반박 보도나 정정보도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의 제시는 없어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원고 A에게 일부 사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여론전과 소송전 준비와 개시, 갈등의 표면화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여론전과 소송전 준비 내지 갈등의 표면화' 등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에 따르면 원고 A 측이 피고의 F 지분 매수를 위해 여론전과 관련 소송전을 준비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2) 당사자의 분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표면화되었다. ① 2024. 4. 3.자 항의메일(카피 문제제기)과 2024. 4. 16.자 항의메일(밀어내기, 카피 등 문제제기) 발송으로 원고 A 측은 피고에게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② 2024. 4. 22. 피고는 F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고 원고 A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고 해임절차에 착수하였다. ③ 2024. 4. 22. 13:27 "CF"이란 제목의 AM언론 단독기사가 보도되었다(본문 : … F 경영진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 … 갑10). ④ 2024. 4. 22. 18:41 원고 A은 BE 단독기사(제목 : CG 본문 : … D의 감사 착수 관련 'F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을19)로 F의 입장문이 보도 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었다.

3) 원고 A 측의 2024. 4. 3.자 항의메일과 2024. 4. 16.자 항의메일 발송은 그 갈등이 내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피고 측의 2024. 4. 22.자 AM언론 단독기사로 그 갈등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되었다고 할 것이다.[30] 바로 이어진 원고 A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2024. 4. 22.자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쌍방의 입장문이 보도되면서 공방이 격화되었는데 이는 모두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쌍방의 반론권 행사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 A, B은 G 멤버들을 등에 업고 대외적 논란을 일으켜 피고를 궁지에 몰아넣으면 피고가 보유한 F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물색·접촉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기획사의 유일한 수익기반인 것과 별개로 이들에게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대중적 이미지와 평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크게 달라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성상,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기획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기획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여러 제보와 조사를 통해 원고 A, B의 배신적 의도와 계획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여 원고 A, B의 공세에 무방비로 당하게 되었더라면, 피고는 아마도 원고 A, B이 원하는 대로 F 지분을 저가에 매각하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한 위험에서 사업적 평판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키는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A 측이 제기한 의혹 중 비교적 중한 것들이 카피와 밀어내기(언론보도, 국정감사 주제 선정 등)로 보이는데, ① 2024. 4.경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쌍방이

30) 피고의 주식 종가는 2024. 4. 22. 비교적 큰 폭(7.8%)으로 하락하였고 4. 22. - 4. 26. 주식 거래물량이 대폭 증가하였다(주식 종가 : 2024. 3. 7. 185,900원, 4. 2. 222,500원, 4. 3. 224,000원, 4. 4. 221,000원, 4. 15. 214,500원, 4. 16. 223,000원, 4. 17. 219,000원, 4. 18. 228,500원, 4. 19. 230,500원, 4. 22. 212,500원, 4. 23. 210,000원, 4. 24. 211,000원, 4.25. 212,000원, 4. 26. 201,500원). 이러한 주가 하락은 2024. 4. 22.자 AM언론 단독기사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어진 양측의 공방 격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피고는 업무상배임 고발사건에서 시총 8,000억 원 하락을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언론 등을 통한 여론전과 소송전을 진행하였음에도 F의 20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23년도와 유사한 점, ② 특별히 카피와 밀어내기 문제로 피고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자료의 제시도 없고, 밀어내기 문제는 자체 감사를 통해 2건을 적발을 하고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규정 신설을 통해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점, ③ 향후 원고 A의 이탈 여부는 F의 미래가치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업무상배임 고발사건에서 A 측의 카피 문제 제기 등 갈등 야기로 시가총액 8,000억 원 하락을 주장하였는데, 양자 간 갈등의 전면적 표면화로 원고 A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갈등의 표면화는 2024. 4. 22. 13:27 "D, G 소속사 F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 발동"이란 제목의 AM언론 단독기사로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갈등의 내부화로 F(G)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전면적 표면화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F 지분을 저가에 매각하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한 위험에서 사업적 평판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키는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는 부분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 해지로 인하여 잃게 되는 원고 A의 풋옵션 행사가액은 약 256억 원으로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위험 주장과 F 독립 방안 모색이 담긴 카카오톡 등 관련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비밀유지의무 위반 부분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 A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 주식 매도의 요건 및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및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 것일 뿐 피고나 F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

2) 원고 A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를 지인 또는 투자자등에게 전달 또는 제시하긴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실제로 제3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가 보유한 F 지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 A이 이 사건 1차 기자회견 당시 공개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은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남은 나머지 25% 지분(전체 지분의 5%)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원고 A 입장에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A의 2024. 5. 2.자 입장문(을39)에서 언급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은 피고의 2024. 4. 26.자 입장문(을146)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박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는 제11조에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규정한 이후에 제12조 기타사항 제12.9조에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서의 체계에 비추어 위 비밀유지의무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부수적 채무라고 할 것이다.

바. 계열회사 손해 등 기타사항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 A, B이 고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또는 중과실로 F 또는 피고나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2024. 7. 8.자 해지통지서에 나타난 약정해지 사유의 요지는 원고 A이 F의 독립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카피, 밀어내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앞서 본바와 같이 모두 배척되었다) 나머지 사유는 위 주장의 구성요소, 효과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서 부수적 채무 영역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들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원고 A, B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1.4조 제(b)항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반'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통지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1.4조 제(b)항은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주당 공정가치가 산정된 다음 영업일'에 피고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는바, 피고가 원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이행이 완료되면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종료되는 점[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1.1조 제(c)항],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1.4조 제(b)항은 원고들의 의무 위반의 내용, 정도와 무관하게 매매대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1주당 매매대금은 '이 사건 주식 액면가액(5,000원)'과 '이 사건 주식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 즉 최대 1주당 5,000원인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가액(1주당 6,522원)보다도 적은 점, ③ CK회계법인은 2024. 9.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할인율 12.5%, 영구성장률 1.0%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치를 68,770원으로 평가한 점(을91)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및 그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25,594,889,670원, 원고 B 1,725,498,180원, 원고 C 1,437,915,150원)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68,770원)보다 낮은 1주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5,000원에 매도하는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1.4조 제(b)항의 주식매도청구권은 해지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매각하지 못하는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위 규정의 '본 계약(이 사건 주주간계약) 위반'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1.2.조 (a)항의 '본 계약(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5,594,889,670원, 원고 B에게 1,725,498,180원, 원고 C에게 1,437,915,15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남인수

판사 김효희

판사 장보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별지1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전문

2.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종결 이후, D는 F의 최대주주, A은 F의 주주이자 등기임원, B 및 C은 F의 주주이자 주요 임직원, F는 당사 회사로서 F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F의 경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2조 F의 경영 등에 관한 사항

2.1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a) A이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D는 A이 F 설립일인 2021. 11. 2.부터 5년의 기간 동안 F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F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A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또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은 대표이사 및/또는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지체 없이 사임하도록 한다.

1. A이 고의·중과실로 F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A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A이 F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 업무협약의 해지 등

3.1 D, F 및 A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2021. 11. 11.자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업무협약은 A 등과 D 사이의 2023. 3. 27.자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에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소유주식 양도의 제한

이해관계인(원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F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벌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각, 이전, 질권 기타 담보 설정, 처분, 의결권 위임 기타 그에 관한 일체의 계약, 옵션 또는 약정을 포함함. 이하 총칭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A의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5.1 A은 F의 설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A이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F 발행주식 중 75%에 상당하는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D에게 해당 주식을 매수할 것(이하 "풋옵션"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5.3 A이 매수인지정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A과 지정매수인 사이에 아래 각 항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1주당 매매대금: (풋옵션을 행사한 날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2년의 사업연도에 대한 F의 감사보고서상 F의 영업이익 평균액 x 13.0 – 풋옵션 행사통지일 기준 F의 금융기관차입금)/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의 F 총 발행주식 수

제10조 확약사항

10.3 A의 확약사항

A은 D에게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a) A은 F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F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F 및 기타 D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A은 F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및 여하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D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d) A은 F가 D 산하 레이블인 점을 인지하며, D가 경영상 필요 또는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F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F로 하여금 신의성실하게 이와 같은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e) A은 F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F에 재직하여야 하며, 위 기간 및/또는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D 및 F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직·간접적으로(특수관계인을 통하는 것 포함) (i) 국내·외에서 D, F 및 그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사업(이하 "경업금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거나, (ii) 경업금지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신설하거나, (iii) 경업금지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분 투자 또는 자금 대여를 하거나, 합병하는 행위 또는 (iv) 경업금지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사업자 또는 법인 등에게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자문, 컨설턴트, 고문 등을 포함하여 여하한 형태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등

11.2 해지

어느 당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본 계약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다만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는 경우)

11.3 해지의 효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들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며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다.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 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제11.4조와 제12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11.4 손해배상

(a)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 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b) 본조 제(a)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D로부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십사(14)일 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D가 직접 또는 D가 지정한 제3 자(이하 본 조에서 총칭하여 "콜옵션 행사자")를 통하여, 그 시점에 해당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F 주식의 전부(이하 본 조에서 "콜옵션 대상주식")를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본 조에서 "콜옵션")를 갖는다. D가 본 항에 따라 콜옵션을 행 사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i) D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D는 콜옵션 행사자 및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한 콜옵션을 행사할 것임을 기재하여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하여야 한다.

(ii) D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당사자들은 콜옵션 행사통지가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이십(20)영업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외부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선정된 날로부터 이십(20)영업일 이내에 콜옵션 대상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Fair MarketValue, 이하 "본건 공정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당사자들은 본건 공정 가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iii) 본항 제(ii)호에 따라 대상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가 산정된 다음 영업일 에,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하여 D와 해당 이해관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 금은, (x) F 발행 보통주식의 1주당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ii) 본건 공정가치의 칠십(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 다.

(iv)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이십(20)영업 일 이내에 매매대금 지급, 양도대상주식의 이전 등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12.9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및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a) 본 계약의 존재 및 내용, (b) 본 계약과 관련한 협상 내용, (c)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성이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 일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i)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ii) 법률상 정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 (iii)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iv) 공개되는 정보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의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대리인, 자문사 등 관련자에 국한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본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별지2

원고 A의 선행 가처분 사건

* 채권자는 원고 A,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여기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란 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임무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가 202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서 그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G를 데리고 채무자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F의 발행주식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F에 대한 채무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F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F의 부사장인 I 등과 함께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그와 같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그러한 채권자의 행위들이 채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F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R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R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G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F와 G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G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F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F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G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F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채권자는 F의 핵심 자산인 G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G의 법정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G의 법정대리인들이 채권자에게 R의 G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채권자가 G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채권자가 R과 G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채무자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R의 G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F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채무자가 문제 삼는 채권자의 행위들로 인하여 F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F의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4) ① 광고계약의 구조상 G의 소속사인 F가 지급받게 되는 금원은 G의 모델료이고, 광고 촬영 시의 스타일링 용역비는 광고주가 별도의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며, F가 CH에게 G의 광고 스타일링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CH가 F 이사회의 겸직 허가를 통해 외주업체 소속으로 스타일링 용역비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CH가 수령한 스타일링 용역비를 발생시킨 광고 스타일링에 F의 직원들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CH가 수령한 스타일링 용역비 자체가 F의 손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를 비롯한 F의 이사회가 CH의 스타일링 외주업체 겸직을 허가하여 CH가 G의 광고 촬영 시 발생한 스타일링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 채권자의 F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채권자가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F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F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6) F의 사내이사인 B이 2024. 4. 15. 보유하고 있던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자 발행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영진이나 채무자의 계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F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채권자에게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사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채무자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8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불과한 F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의 자산인 G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

나) ① 채권자가 2024. 4. 25.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과 그 정도, ②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 주주간계약 내용의 출처가 채권자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채권자의 2024. 5. 2.자 입장문에서 언급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은 채무자의 2024. 4. 26.자 입장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2.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2) 나)의 (2)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채권자가 시정을 요구한 채무자의 G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채무자의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채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F 또는 채무자나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F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F에 대한 배임행위 및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F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F에 대한 배임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함은 위 3. 가.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라) 앞서 본 F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볼 때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에게 F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별지3

원고 A, B 등 불송치 결정서(을43)

본 건 수사로 확보한 카카오톡의 당사자 I A간 대화 자료의 전반을 살펴보건데, 피해자인 F의 이익이나 성과를 지키기 위함으로 보이고, 고발인의 감사보고서 기재와는 달리 '엑싯(EXIT)'는 '경영권 탈취' 의미의 '엑싯'이 아닌, 주주간계약상 대표 A이 정상적인 만기 5년을 채운 뒤, 풋옵션 행사한 이후를 가정하고 있다.

고발인 측의 감사보고서를 비롯한 주장과 같이 설명 그러한 대화의 일부가 'D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인상을 주었다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련 포렌식 확보 카카오톡 대화 상 '주주간계약의 임기 만료 이후'를 가정하고 있고, 더욱이 F의 IPO(주식상장)을 가정하거나 혹은 주요 주주에게 F를 팔도록 한다는 점도, 그 대전제는 '모회사의 승인'을 들고 있다.

결국 고발인은 모회사에 대한 피의자들의 반감을 들어 '탈D' 정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모회사에 대한 반감의 배경에는 ① 대표 A의 E 입사 이후 G 데뷔까지의 일련의 과정상 신뢰 관계 훼손, ②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의 불신(콜옵션 허위고지), ③ 주주간계약 내용 자체의 불공정성(독소조항) 등에 기반하고 있고, 이에 더해 ④ 그룹 내부에서 행해진 '음반(초동) 밀어내기 행태'나 ⑤ '자회사간의 카피 이슈' 문제의 제기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에 있어 '反불법 및 창작 윤리'에 기반한 깊은 반감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실행행위(카피이슈 항의서한 전송행위)가 과연 F는 물론 모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써 일반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부대표 B의 경우는 2024. 2월 당시 내부적으로 퇴사 예정이었던 사실이 포렌식 확보 대화로 확인되고 있고, 대표 A은 당시 부대표 B의 업무 능력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가졌던 것도 확인되고 있어, 공동 범의를 가졌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공동 범의를 입증할 자료도 달리 없다.

따라서 고발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의 E 입사(CBO) 및 CI에서의 공개오디션(O), 이어진 F의 설립과 O에서 출발한 G 계약의 배경과 일련의 과정, 주주간계약 변경 협상 진행 중이었던 상황, G 카피 이슈와 관련된 '항의 서한 전송행위' 등의 기초 배경 사실과 일련의 진행 상황, 수사로 확보한 이건 피의자들의 대화(포렌식) 전반을 고려할 때, 그것(항의 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한 전송행위)이 이건 경영권 찬탈을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이러한 항의서한 전송행위가 'G의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로서 피해자인 F에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행위가 F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식했다고도 볼 수 없다.

○ 배임성 여부

고발인은 이건 실행행위(2024. 4. 3. 부모를 이용한 항의서한 전송행위)를 중대한 '사해행위'로서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라 주장하나, 실제 R의 데뷔 ('24.3.25) 이후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G 안무나 컨셉 카피이슈'가 화제가 되었으며, F와 G 멤버 간의 아티스트 전속계약 제5조 (4)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회사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주주간계약 10.3조 (c)항의 확약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아닌 피해회사 및 경영진의 의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

○ 실행 행위 여부

고발인은 '부모를 이용한 항의 서한 전송' 행위는 정당성을 가장한 외관 작출 행위라고 표현하나, 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 취득 및 F에 대한 손해발생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 됨을 알면서 행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이익취득과 손해 발생과의 대응 관계

고발인은 보충 진술에서 모회사(D)는 자회사(F)의 이익과 손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자회견 포함 2일 기간의 'D 시가총액 8,000억 원 하락을 중대한 손해 발생의 지표로도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자회사와 모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당 사안에 있어 자회사의 손익은 모회사에 귀속되고 있어 연결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가 자회사의 손해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경영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해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또한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는 경우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에게 책임 지우기도 하는데, 본 건과는 그 전제나 작용 방향이 달라, F의 손해 지표로 보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고발인이 주장하는 G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높이는 '액수 미상의 손해'와 그로 인해 취득할 '불상의 이익'은 구체화 되지 않아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 배임행위와 이익취득(손해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6

'아티스트 부모를 이용한 항의 서한 전송' 행위가 F의 손해를 야기하는 이익 취득 행위로서 상당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항의 서한의 기초안을 G 부모에게 제공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부모의 서명이 날인되고, 작성 명의자에 의해 그 내용과 날인이 진실임을 밝힌 이상 그것이 진의 없는 가공된 서면 내지 외관 작출 일환으로 작성된 서면으로 보기도 어렵다.

○ 종합 판단

배임죄의 배임행위는 모든 임무위배 행위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임무위배 행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임무위배 행위와 이익 취득 간에는 상당인과 관계를 요한다.

이 사건의 'G 부모 이용 항의 서한 제출 행위' 및 '관련 기자회견등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등 경영진인 피의자들이 정관 및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진행의 전반을 살펴보면 도리어 F의 대표이사로서 충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따라서 위 각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들의 행위는 그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G의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높여, 이른바 '실해 발생의 위험'을 높였다고 평가되기도 어렵고, 그러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혐의 없다.

끝.